인사위원회규정

2021. 6. 28

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에스케이디앤디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위원회는 대표이사의 평가 및 유임 여부, 사내이사의 보수액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, 주요 임원의 평가 및 보수액 책정 결과에 대해 회사로부터 보고를 받는다.

제2장 구성

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50%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,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 및 위원회 참석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 검토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(해당 대표이사 또는 개별 사내이사인 위원)은 해당 사항의 검토 시 참석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(검토사항)

- 1.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유임 여부
- 2. 대표이사 해임 및/또는 선임 제안
- 3. 대표이사 후보 추천

4.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

제10조 (보고사항)

- 1. 주요 임원의 평가 및 개별 보수액 책정 결과
- 2. 기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, 회사가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

제11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되 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.

제12조 (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등)

-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임기 중 대표이사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업무평가를 진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표이사의 유임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평가의 결과, 제2항에 따른 유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에 통보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평가 및 유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3조 (대표이사 해임 또는 선임 제안 등)

- ① 위원회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평가 및 유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결과, 해당 대표이사의 유임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, 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 및/또는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제안한다.
-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 및/또는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진행하기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.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의 이사회 소집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한다.

제14조(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등)

- ① 회사는 대표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관리·유지하는 대표이사 후보군 중에서 적절한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그 목록(이하 "대표이사 후보 목록")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대표이사 후보 목록을 제공받아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대표이사 후보 목록의 후보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 이 때,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도 새로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사내이사 보수액 검토)

- ① 위원회는 각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각 사내이사의 연도별 보수액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액 검토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6조(주요 임원의 평가 및 보수액 책정 결과 보고)

- ① 회사는 주요 임원의 평가 및 개별 보수액 책정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 때, 주요 임원이라 함은 회사 성과 창출/기업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원을 말하며, 구체적인 범위(대상자)는 회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.

제17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8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칙

제19조 (사무국)

- ① 위원회의 사무국은 인사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.
- ② 사무국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20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